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

◇ 제·개정 이유

- 교육부에서는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,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종류와 대학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「학술진흥법」을 개정(20.12.)한 바 있음
 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적용대상을 "사람 및 기관 중심"으로 규정하고,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물(학위·학술 논문, 국가연구개발사업 등)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기술(안 제3조, 제4조, 제10조)
- 나. 악의적 제보를 걸러내기 위하여 익명제보 요건 강화 및 자료 보완 근거 신설(안 제13조, 제14조)
- 다.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명예회복 노력 내용을 신설(안 제15조)
- 라. 학술단체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(안 제16조)
- 마.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(안 제20조)